

감사위원회 규정(案)

제 정 : 2006년 11월 2일

개 정 : 2019년 2월 13일

개 정 : 2020년 5월 20일

주식회사 LF

감사위원회 규정

항 목	내 용	비 고
<p>제 1 장 총칙</p> <p>제 1 조 (목적)</p> <p>제 2 조 (적용범위)</p> <p>제 3 조 (직무와 권한)</p>	<p>이 규정은 주식회사 LF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2 항 외에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다.</p>	
<p>제 2 장 구성</p> <p>제 4 조 (구성)</p>	<p>①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p>	

항 목	내 용	비 고
제 5 조 (임기)	<p>③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사임·유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①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법령,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p> <p>② 감사위원회 위원은 연임될 수 있다.</p>	
제 6 조 (위원장)	<p>① 감사위원회는 제 10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p> <p>② 위원장의 有故로 인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제 3 장 회의		
제 7 조 (종류)	<p>① 감사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p> <p>② 정기회는 반기 1 회 일정한 날을 정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③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p>	
제 8 조 (소집권자)	<p>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 有故로 인하여 직무를</p>	

항 목	내 용	비 고
제 9 조 (소집절차)	<p>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6 조 2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감사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감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① 감사위원회 소집은 회일을 정하고 12 시간 전에 각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고하여야 한다.</p> <p>②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제 1 항의 절차없이 회의를 열 수 있다.</p>	
제 10 조 (의사의 진행 및 결의방법)	<p>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한다.</p> <p>②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p> <p>③ 감사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p> <p>④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⑤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⑥ 상법 제 393 조의 2 의 제 4 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제 11 조 (부의사항)	감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 목	내 용	비 고
<p>제 12 조 (이사회보고)</p> <p>제 13 조 (내부회계 관리제도)</p>	<p>1.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p> <p>2. 감사에 관한 사항</p> <p>(1) 상법 제 412 조의 2 소정의 이사의 보고에 따른 조치</p> <p>(2)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따른 법률 제 10 조 소정의 외부감사인의 통보에 따른 조치</p> <p>(3) 자회사의 조사에 관한 사항</p> <p>(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p> <p>(5)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 또는 개정의 승인</p> <p>3. 다른 감사부문에 관한 사항</p> <p>(1)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요청</p> <p>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p> <p>(1)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및 주주총회에서의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p> <p>5. 기타 법령에 정하거나 정관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1.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p> <p>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p> <p>① 대표이사는 매사업연도마다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면서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p>	

항 목	내 용	비 고
제 14 조 (의사록)	<p>② 감사위원회는 매사업연도마다 대면 회의를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 개최 1주전까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① 감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 사본을 회의 후 10일 이내에 이사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제 15 조 (감사록)	<p>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감사록은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감사위원회가 의결하여야 한다.</p>	
제 16 조 (관계인의 출석 등)	<p>① 감사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p>	
제 4 장 감사인선임 등 제 17 조 (선임)	<p>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을 선정한다.</p>	

항 목	내 용	비 고
제 18 조 (감사인의 변경)	<p>②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3 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감사인을 연속하는 6 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p> <p>③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관하여 회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되어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2 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기타 감사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 19 조 (감사인의 해임)	<p>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 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 월 이내에 감사인의 해임을 요청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항 목	내 용	비 고
<p>제 20 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p> <p>제 21 조 (독립성확보)</p> <p>제 5 장 보칙</p>	<p>4.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회사로서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p> <p>5.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그 지배, 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지정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p> <p>① 감사위원회는 직전 사업연도에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행한 감사인 (이하 “전기감사인”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을 선정하거나 제 18 조에 의하여 감사인을 해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감사인 및 해임되는 감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② 감사위원회는 전항의 경우 전기감사인 또는 해임 요청되는 감사인에 대하여 10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 감사위원회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감사인 또는 해임 요청되는 감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진술한 의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p> <p>감사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p>	

항 목	내 용	비 고
제 22 조 (사무국)	<p>감사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통지,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 의사록 작성 및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p>	
제 23 조 (규정의개정)	<p>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附 則</p> <p>(施行日) 이 規程은 2006年 11月 2日로부터 施行한다.</p>	